

# 「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지광천 의원이 발의하였고, 2019년 8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 1. 제안이유

- 평창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(안 제5조 ~ 제9조)
  -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(창업, 홍보, 정보제공 등)
  -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,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원
  - 시설개선 지원(1천만원 이내 최대 50퍼센트)
  -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
- 다. 지원의 제한 등(안 제10조)
- 라. 지원계획의 수립,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 등(안 제11조 ~ 제12조)
- 마.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회의(안 제13조 ~ 제14조)

## 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자유로운

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,

○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, 특례보증 지원 및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

안 제11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·공고토론회 등의 운영원칙

안 제12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

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각각 정하였습  
니다.

○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#### 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○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## [관련법률]

### ○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